

「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명희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-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자금, 컨설팅 또는 기술,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청년농업인의 역할(안 제3조~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5조~제6조)
- 청년농업인 지원사업, 신청 및 관리·감독 등(안 제7조~제9조)
-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(안 제10조~제11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3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청년농업인에게 자금, 컨설팅 또는 기술,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우리 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